

## 5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(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)

파주시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급, 인건비 지급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'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' 대책을 시행합니다.

- 대 상 :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
- 지원금액 : 업체당 1백만원 (1회 정액 현금지급)
- 신청기간 : 2020년 4월 8일 ~ 9월 30일, 09:00~18:00
- 신청절차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

\*신청서류

-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  - ② 신분증 및 통장사본
  - ③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  - ④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
  - ⑤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
  - ⑥ 매출액 10% 감소 증빙자료
  - ⑦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(상가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)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 Q&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&A

### I 지원대상

【체크리스트 1】 아래 항목에 **모두 해당되어야** 지원대상입니다.

| 항 목 |   |
|-----|---|
| 1   | 파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.   |
| 2   | 집주소가 파주시로 되어있다.   |
| 3   |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.       |
|     |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창고업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다. |
| 4   | 2019년 연간 매출액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 |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내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 |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분의 1 이상 감소했다.            |

**【체크리스트 2】** 아래 항목에 **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**

| 항 목 |   |
|-----|---|
| 1   |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이다.<br>* 단, 행정지도를 받아 휴업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! |
| 2   | 2020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장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 |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시에서 파주시로 이전한 사업장이다.                    |
| 4   |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시에서 파주시로 집주소를 옮겨왔다.                    |
| 5   | 상가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쓰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|
| 6   |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 사업자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 | 법인사업자이다.  |
| 8   | 유희·도박·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|

◆ **내가 어디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? 안내서 10쪽 참고** [\[안내서 바로가기\]](#)

### ■ 제출서류

|   |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③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④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<br>(이 중에 한가지 선택하여 제출)      | 상시근로자가<br>없는 경우 | - 소상공인확인서<br>-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|
|   | 상시근로자가<br>있는 경우 | - 소상공인확인서<br>-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<br>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<br>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br>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|
|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<br>(이 중에 한가지 선택하여 제출)  |                 | - 표준재무제표증명<br>- 사업장현황신고서  |
| ⑦ 매출액 10% 감소사실 증빙자료<br>(이 중에 한가지 선택하여 제출) |                 | -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<br>-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<br>(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)<br>- 그 외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금년도 월평균<br>매출액이 10%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<br>자료 |
| ⑧ 임대차 계약서 사본(주택임대차계약서는 신청불가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⑨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 ⑩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
◆ **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? 안내서 4쪽 참고** [\[안내서 바로가기\]](#)

### ■ 지원금액

현금 100만원이 1회 계좌로 지급됩니다.

(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회 100만원만 지급)

### ■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0년 4월 8일부터 ~ 9월 30일

○ 신청방법

①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② 상인협의회로 방문 신청

③ 문서24(<https://open.gdoc.go.kr/index.do>)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◆ 온라인 신청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? 안내서 14쪽 참고[[안내서 바로가기](#)]

### ■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 마감인가요?

신청은 선착순 마감이지 않으나,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, 다른 사람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.

### ■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약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

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

### ■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○ 파주시 긴급 소상공인 지원 콜센터 (☎031-940-8400)

○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

### ■ 안내책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?

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서와 안내책자 파일 다운받기 [[신청서 및 안내서 바로가기](#)]